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664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 률안	2211719	서삼석의원	'25.7.25.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5.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2219924	김선교의원	'26.7.13.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가.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9.8.)에
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에
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확보하여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 등 목적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8제1항 신설)
-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유출·반출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규정하며,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폐기하고 불응 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안 제3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안 제47조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 다. 농촌진흥청장이 이 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이 조에서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진단 및 예찰·역학·소독·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 생산을 위한 경우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해충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방제 대상 병해충의 보존·관리,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약제(藥劑)”를 “약제”로 한다.

제45조의3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46조제2항 중 “따른”을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47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용한 자

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

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0의5. 제31조의8제5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8(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① 제31조제1항 본문에</u> <u>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제32</u> <u>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u> <u>해충(이하 이 조에서 “방제 대</u> <u>상 병해충”이라 한다)을 이용</u> <u>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u> <u>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u> <u>한다.</u> <u>1. 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류 .</u> <u>진단 및 예찰 · 역학 · 소독 ·</u> <u>방제 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u> <u>를 위한 경우</u> <u>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u> <u>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u> <u>여 필요한 약제(藥劑) 생산을</u> <u>위한 경우</u> <u>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u> <u>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u> <u>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u> <u>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u>

② 누구든지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받은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을 종료할 경우 해당 병해충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 폐기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해충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와 방법, 방제 대상 병해충의 보존·관리, 행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8.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정처분의 세부기준, 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

---약제-----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청문)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7.·8.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위임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11. (생략)	----- -----. 제47조(벌칙)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허가없이 이용한 자</u> <u>10의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방제 대상 병해충을 해당 시설 밖으로 유출 또는 반출한 자</u> <u>10의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u> <u>10의5. 제31조의8제5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u> 11. (현행과 같음)
---	---